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당보조금 반환시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근거 마련〉

■ 양부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211호)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양부남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8. 18.
3. 회 부 일 : 2025. 8.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이를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고, 회수가 어려운 때에는 이후 해당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그런데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정당이 이후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회수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강제징수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이를 회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라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의 이유로 해당 정당이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아 이루어지는 강제징수의 경우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문성을 갖춘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회수가 어려울 때나, 정당이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30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정당이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반환해야 할 보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9조(보조금의 감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금액을 회수하고, 회수가 어려운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 5.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제29조(보조금의 감액) ① ----- ----- <u>해당 금액을 이후 해당</u> ----- ----- ----- <u>감액하거나, 회수하여야 한다.</u> 1. ~ 5. (현행과 같음) ② <u>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해당 금액의 회수가 어려울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u> ③ <u>제2항에 따른 해당 금액의 징수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u> ④ <u>제1항에 따른 해당 금액의 회수방법이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u>
제30조(보조금의 반환) ① (생략)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반환하여야	제30조(보조금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u>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다.</u> ③·④ (생략)	----- <u>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u> ③·④ (현행과 같음)
--	---

‘정치자금’은 정치인이나 정당이 정책 개발, 입법 활동, 지역구 활동 등 다양한 정치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현행법상 당비나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등을 그 재원으로 함.

이 중 보조금은 정당의 보호와 육성을 목적으로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국가는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한 금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 각 정당에 ‘경상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법 제25조제1항),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및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각 선거마다 보조금 계상단가를 추가하여 ‘선거보조금’을 함께 지급하고(법 제25조제2항), 이외에 여성·장애인·청년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장애인·청년을 추천한 정당에 한하여 각각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 청년추천보조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

2024년도 기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총액은 약 1,010억 200만원으로, 경상보조금 약 501억 8,900만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따

른 선거보조금 약 501억 9,700만원, 여성추천보조금 약 4억 3,900만원, 장애인추천보조금 약 1억 7,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년추천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았음.

《 2024년도 국고보조금 지급 현황 》

(단위 : 백만원)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	청년추천보조금	총액
50,189	50,197	439	175	-	101,002

자료 : '연도별 국고보조금 지급내역(2001년~2024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고보조금 제도는 사적 정치자금력이 선거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입법 과정에 사적 경제력이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정당 간 자금조달 격차를 완화하여 후보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으므로,¹⁾

이와 같은 공적 목적을 위해 지급되는 정당보조금은 투명성, 객관성, 합목적성이 확보된 방식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법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사용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은 보조금의 구체적 사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은 인건비, 사무용 비품 및 소모품비, 사무소 설치·운영비, 공공요금, 정책개발비, 당원 교육훈련비, 조직활동비, 선전비 및 선거관계비용 등에

1) '해외 국가의 국고보조금 제도의 현황에 관한 연구', 이부하, 2019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사용할 수 있으며(법 제28조제1항), 경상보조금의 일정 부분은 정책연구
구소 운영, 시·도당 지원, 여성정치발전, 청년정치발전 등을 위하여 사
용되어야 하고(법 제28조제2항), 여성·장애인·청년추천보조금은 각 지
급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하여야 함(법 제28조제3항).

한편, 제한된 용도 외의 사용, 지급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용, 회
계보고의 허위·누락 또는 미보고 등의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회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후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할 수 있고(법 제29조),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정
책연구소가 해산 또는 소멸된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은 반납하여야
하며, 정당이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는 등 강
제징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법 제30조 및 법 시행규칙 제31조).²⁾

최근 5년간 정당보조금의 회수·감액 내역을 보면, 총 58,740,884원이
조치되었으며, 총 11건 중 2건이 회수, 9건이 감액으로 나타나, 용도와
사용 등 위반 사례 대부분이 감액 조치 형태로 처리되고 있음.

2) 「정치자금법」 제30조④보조금 잔액의 반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②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잔액반환
에 관하여는 제3조(국고귀속대상 당비의 처리)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국고귀속대상 당비의 처리)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을 받은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지정된 납
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
하여야 한다.

《 최근 5년간 정당보조금 회수 또는 감액 현황 》

(단위 : 원)

연도	정당명	위 반 내 용	금액(조치)
2020	A당	임차노트북을 분실하여 노트북 배상금을 선거보조금으로 지출	8,227,980 (감액)
		각종 당원집회 행사에서 당원에게 식사 및 다과를 제공하는 등을 경상보조금으로 지출	
2021	B당	총 경상보조금 중 10%를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일부 미사용하였고 시·도당 지원도 일부 미사용	3,344,948 (감액)
	A당	2020. 5. 6.~10. 6. 4대보험 연체료, 차량취득가산세, 주정차과태료 등을 보조금으로 지출	978,458 (감액)
		2020. 9. 10., 12. 29. 도당사무소 관리비 연체료 2건을 보조금으로 지출	
	C당	총 경상보조금 중 10%를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일부 미사용	1,572,962 (회수)
2022	D당	건강보험료 연체료 및 시당사무실 전기료 연체료를 경상보조금으로 지출	61,720원 (감액)
	E당	2020.12.~2021. 11.까지 전기요금을 납부함에 있어 건물주가 미납한 전기요금을 경상보조금으로 지출	58,980원 (감액)
		2022. 5. 11. 4월 관리비 연체료를 경상보조금으로 지출	
	A당	2021. 2. 23. 건강보험료 연체료를 경상보조금으로 지출 연구원 2명을 시·도당에 파견하여 사무처장 역할 수행에 대한 급여를 경상보조금 지출	42,703,480원 (감액)
2023	A당	2022년 9월, 10월, 11월분 유급사무직원 4대 보험료 연체료를 경상보조금으로 지출	28,460원 (감액)
	B당	총 경상보조금 중 30%를 정책연구소에 사용하여야 하나, 일부 미사용	288,316 (감액)
		2022. 9. 14. 사무처 인터넷요금 가산금을 경상보조금으로 지출	
2024	F당	총 경상보조금 배분·지급 및 사용 시 「정치자금법」 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한 비율을 준수하지 않아 일부 미배분	348,470원 (감액)
	G당	유급사무직원 4대보험료 등의 연체료를 경상보조금으로 지출	1,127,110원 (회수)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는 정당보조금의 ‘회수’의 경우 별도의 강제집행 근거가 부재하고, 금액 회수에 대한 집행 전문성이 크지 않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회수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 구조적 한계에 따른 실제 집행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또한, 용도 외로 보조금을 사용한 정당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일정 득표율을 달성하지 못하는 등 보조금 지급 대상 자체에서 제외되는 경우,³⁾⁴⁾ 이후 지급분에 대한 감액 조치를 적용할 수 없게 되어, 문제적으로 사용된 보조금을 국가가 환입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

개정안은 정당보조금 ‘회수’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하여 국세채납처분 예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제징수 절차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 정당보조금 ‘반환’ 관련, 현행 규칙에 규정된 강제징수 사항을 법률로 상향, 명문화함으로써 법적 명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 3)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 ①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지급 당시 「국회법」 제33조(교섭단체)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그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지급한다.
- ② 보조금 지급 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지급대상이 아닌 정당으로서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100분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
1.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
 2.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당으로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도 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0.5 이상인 정당
 3.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지급액을 제외한 잔여분 중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그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고, 그 잔여분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 ④ 선거보조금은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에 대하여는 이를 배분·지급하지 아니한다.
- 4) 정당보조금은 4분기에 걸쳐 지급되며, 본문의 상황은 1분기 때 보조금을 지급받는 정당이 1분기 중 국회의원 선거 등으로 인해 2분기부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임.

다만, 개정안 제29조제1항은 “감액하거나, 회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원칙적으로 ‘회수’를 우선하고, 회수가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개정안이 강제징수 절차를 도입하여 ‘회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전단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후단을 “감액하여야 한다”로 규정하는 것이 체계정합성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보임.

《 법 제29조제1항 수정의견(안) 》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안)
제29조(보조금의 감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금액을 회 수하고, 회수가 어려운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 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보조금의 감액) ① ----- ----- -- <u>해당 금액을 이후</u> <u>해당</u> ----- ----- - <u>감액하거나, 회수하</u> <u>여야 한다.</u>	제29조(보조금의 감액) ① ----- ----- -- <u>당해 금액을 회수</u> <u>하고, 회수가 어려운</u> <u>때에는 그 이후 당해</u> ----- -- <u>감액하여야 한다.</u>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정당에 대한 회수 절차와 관련하여, 개정안을 통해 강제징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치자금 사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2
